

2024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제1차 회의록

- 회의일시: 2024. 3. 7.(목), 13:00
- 장 소: 해인사 보경당(경남 합천)
- 출석위원: 김종대, 석대권, 이순녀, 전경욱
천혜숙, 혜일(이승우), 황경숙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이하 자료와 같음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제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업무 절차

업무처리 절차		구체적인 실행 내용
○ 시·도지사 추천 접수(전년도)	=	○ 광역지자체 대상 신규 종목 지정 추천 접수
↓		
○ 관계전문가 검토(전년도)	=	○ 해당 종목 관계전문가 검토 실시 -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
↓		
○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	○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결과 검토
↓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	=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매년 1월 31일까지)
↓		
○ 조사단 구성	=	○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 관련 학회 등 추천,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 ※ 연구용역으로 진행 시 해당 절차 생략
↓		
○ 종목 지정가치 조사 실시	=	○ 전승가치(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대표성 등) 및 전승환경(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등 조사
↓		
○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	○ 지정가치 조사 결과 검토 - 종목만 지정 시 : 지정 예고 여부 검토 -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시 : 인정 절차 진행 ※ 보유자(단체) 인정 절차 추진 시 인정검토 완료 후 관보 공고
↓		
○ 종목 지정 예고 관보 공고	=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30일) 및 의견 수렴 ※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목 지정 여부를 결정
↓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		
○ 종목 지정 관보 고시	=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고시

국 가 무 형 문 화 재 보 유 자 인 정 업 무 절 차

업무처리 절차	구체적인 실행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 (매년 1월 31일까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자 공모</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 공모 게시, 신청서 접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조사단 구성</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 관련 학회 등 추천,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보유자 인정조사(1단계) 실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서면조사(신청서 및 동영상 자료 포함)</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1단계 조사 결과 검토, 2단계 조사대상자 선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보유자 인정조사(2단계) 실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현장조사(실연) 및 면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2단계 조사 결과 검토, 3단계 조사대상자 선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보유자 인정조사(3단계) 실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심층 기량조사(실연)</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3단계 조사 결과 검토,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보유자 인정 예고 관보 공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30일) 및 의견 수렴 ※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보유자 인정 관보 고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 당사자 및 해당 시도 통지 - 인정서 교부, 전승지원금 지급</div>

목 차

【검토사항】

1	‘전통서당교육’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부분공개
2	국가무형문화재 ‘위도띠뱃놀이’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비공개
3	2024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및 전승자 인정조사 (의례·의식 및 전통지식 분야) 관련 전문가 검토 및 추천	비공개

【보고사항】

1	2023년 신규 지정 국가무형문화재 영문 명칭 표기(안) 보고	공개
---	------------------------------------	----

검 토 사 항

1. '전통서당교육'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전통서당교육'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1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5차 회의 '전통서당교육' 종목지정 검토 결과 '보류'된 사항에 대하여 '전통서당교육 전승현황 심화조사 연구('23.5.16.~12.11.)'로 자료를 보완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 종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종목: 전통서당교육

(2) 추진경과

-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발굴을 위한 국민공모전('19.4.1~5.7.)
 - * '전통서당교육', '막걸리 빚기' 등 총 56건 접수 결과를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5차 회의 보고('19.11.15)
-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20.1.22.)
- '전통서당교육'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실시('20.7.22.~12.11.)
- 2021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5차 회의 종목 지정가치 검토 ('21.5.21.)
 - 보류: 학계 등 추가적인 연구 등을 통해 현존하는 전통서당교육의 전승내용과 현황 등을 확인 후 재검토함
- '전통서당교육'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현황 심화조사 연구('23.5.16.~12.15.)

(3) 학술조사 개요

- 조사기간: '23.5월~12월
- 조사기관: (사)오래된미래연구소
- 조사대상: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 등록된 서당 '61개소' 중 활성화된 서당 25개소와 그 외 기관형 서당 4개소

○ 조사내용

- 전통서당교육에 대한 전국 현황 및 전승운영체계, 전승내용, 수강생 등 관계자 인터뷰 등 심화조사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지표에 따른 지정가치 조사 및 지표 평가

라. 검토의견

- ‘전통서당교육’은 삼국시대부터 자생적으로 시작되어 조선시대에 들어와 ‘서당’이라고 명명되었으며 서당교육의 전형이 확립되었음. 과거에는 신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문자와 실용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큰 기여하였으나 현재는 그 교육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다변화되었음
-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통서당교육’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검토할 내용: ‘전통서당교육’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바. 의결사항

- 부결(출석 7명, 부결 7명)
 -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지정가치 미흡

2. 국가무형문화재 위도띠뽀놀이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3. 2024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및 전승자 인정조사 (의례·의식 및 전통지식 분야) 관련 전문가 검토 및 추천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보고 사항

1. 2023년 신규 지정 국가무형문화재 영문 명칭 표기(안)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258호)에 따라 신규 지정 국가무형문화재 5종목의 영문명칭(안)을 정비하였기에 이를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관련 규칙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개별 영문 명칭(안)을 정비하였기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것임.

다. 보고내용

- 1) 근거: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예규 제258호)
- 2) 주요내용: 국가무형문화재 영문 명칭(안) 5건
 - 5개 명절(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 지정일: '23.12.18.
- 3) 향후계획: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 게시 예정('24.3월)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출석 7명, 접수 7명)

붙임 1. 국가무형문화재 영문명칭(안) 1부

2.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258호) 1부

[붙임 1]

국가무형문화재 영문명칭(안)

[2023년 신규 지정 국가무형문화재, 5건]

연번	종목 / 관리 번호	국문 명칭	영문 명칭(안)
1	국가무형문화재 제150호 (2023.12.18.)	설과 대보름	The Traditional Holidays of Seol and Daeboreum
2	국가무형문화재 제151호 (2023.12.18.)	한식	The Traditional Holiday of Hansik
3	국가무형문화재 제152호 (2023.12.18.)	단오	The Traditional Holiday of Dano
4	국가무형문화재 제153호 (2023.12.18.)	추석	The Traditional Holiday of Chuseok
5	국가무형문화재 제154호 (2023.12.18.)	동지	The Traditional Holiday of Dongji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정 2013. 7. 26. 문화재청 예규 제124호
일부개정 2014. 10. 17. 문화재청 예규 제142호
일부개정 2017. 9. 8. 문화재청 예규 제183호
전부개정 2019. 11. 15. 문화재청 예규 제213호
일부개정 2022. 11. 24. 문화재청 예규 제25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문 문화재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문화재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문화재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문화재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 명칭”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또는 등록 시 부여된 문화재의 이름을 말함.
2. “로마자 표기”라 함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해당 음을 로마자로 옮기는 방식을 말함.
3. “의미역(意味譯)”이라 함은 국문 단어의 뜻을 영문으로 옮기는 방식을 말함.
4. “명명 요소(命名要素)”라 함은 문화재 명칭을 구성하고 있는 낱말을 말함.
5. “단일 구성 명칭”이라 함은 하나의 개념·용어 또는 고유한 이름에서 오거나 명명 요소가 하나로 이루어진 문화재 명칭을 말함.
6. “복합 구성 명칭”이라 함은 해당 문화재의 속성을 표시하는 2개 이상의 명명 요소가 조합된 문화재 명칭을 말함.
7. “지명(地名)”이라 함은 유적지, 출토지 및 「지방자치법」제4조,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을 말함.
8. “인명(人名)”이라 함은 사람의 이름·호(號)·시호(諡號) 등을 말함.

제3조(적용) 이 규칙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영문 명칭 지정에 적용한다.

제2장 표기 원칙

제4조(기본 원칙)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문화재의 세계화를 위하여 고유한 국문 문화재 명칭은 가능한 한 보존한다.
2. 우리 문화재의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하여 보통명사는 의미역으로 표기하고, 고유명사는 단어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거나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 표기를 병행한다.
3. 다양한 명명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문화재 명칭은 그 명칭 전체를 표기한다.
4. 상이한 표기 기준의 장단점이 대립될 경우 활용성과 범용성이 큰 쪽을 선택한다.

제5조(일반 원칙)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의 일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마자 표기 방법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어문규범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42호, 2014.12.5.)(이하 “로마자 표기법”이라 한다)에 따름. 단, 이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표기법을 따름.
2. 괄호, 붙임표(-), 아포스트로피('), 쉼표(,) 등의 부호는 각각의 지정된 용도에만 표기 하며, 로마자 표기상 발음을 구분하는 붙임표(-)와 아포스트로피(') 등의 부호는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3. 인명 표기는 원칙적으로 「로마자 표기법」에 따름. 성명이 표기된 경우에는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2호에도 불구하고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단, 인명의 로마자 표기는 그동안 써 오던 표기 방식을 존중하여 쓸 수 있음.
4. 기관·단체 명칭은 해당 기관·단체에서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존중하되, 별도의 표기 관행이 없으면 로마자 표기법에 따름.
5. 지명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고 행정구역 단위 앞에는 붙임표(-)를 사용.
6. 대소문자의 표기는 영문 표기의 각 단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되 전치사, 관사, 접속사는 소문자로 표기.
7. 띄어쓰기는 문화재 지정 명칭 국문의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도서, 회화 등 작품의 고유한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지정 명칭 국문의 의미 단위로 띄어 쓸 수 있음. 이 경우 영문 표기 명칭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

제3장 문화재 유형별 영문 표기 세부 기준

제1절 공통 사항

(생략)

제25조(무형 문화재) 전래 지역의 지명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단, 지명에 붙은 조사는 로마자 표기에 포함하지 않으며 2종의 문화재를 병기하기 위하여 쓰인 “및”은 로마자로 표기하지 않고 “and”를 사용하여 병칭임을 나타낸다.

[보기]

- 강강술래 Ganggangsullae (Circle Dance)
- 옥장 玉匠 Okjang (Jade Craft)
- 봉산탈춤 鳳山탈춤 Bongsan Talchum (Mask Dance Drama of Bongsan)
- 동해안별신굿 東海岸別神굿 Donghaean Byeolsingut (Village Ritual of the East Coast)
- 나주의 샛골나이 羅州의 샛골나이 Naju Saetgollai (Cotton Weaving of Naju)
-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西海岸 배연신굿 및 大同굿 Seohaean Baeyeonsingut and Daedonggut (Fishing Ritual of the West Coast)

(후략)